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버스계정 신설 및 非수익노선·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용도 지출 〉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9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제220994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버스계정 신설 및 非수익노선·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용도 지출(안 제5조 의3 신설 등)	2
※ 참고자료	12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220994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버스계정 신설 및 非수익노선·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용도 지출 (안 제5조의3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설치된 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공항·항만 등 5개 계정에 추가하여 버스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기존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사업 중 버스 관련 사업을 신설되는 버스계정의 세출로 이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 지원 등을 버스계정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u>철도</u> ,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버스, 철도</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u>

현행	개정안
5. ~ 7. (생략)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u>철도계정</u>,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u>철도계정</u>,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용자	<u>승합자동차를 말한다.</u> 5. ~ 7. (현행과 같음) 8. ----- ----- ----- -----제2조제2호가목-----<u>다목</u>,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 -----<u>버스계정</u>, <u>철도계정</u>----- -----. ② -----<u>버스계정</u>, <u>철도계정</u>----- -----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12. (생략) ③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버스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u>버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u>전입금</u>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용자로 인한 수입금</u> 3. 다른 회계로부터의 <u>예수금 및 전입금</u> 4. 제10조에 따른 <u>차입금</u>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차관 수입금</u>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u>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u> ② <u>버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u>손실보상</u>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u>사업에 대한 보조·용자</u>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노선 여객자동차</u>

현행	개정안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② (생략) ③ 도로계정, <u>철도계정</u>,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생략)	<u>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용자</u>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보조 5.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용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버스계정, 철도계정</u>----- ----- ----- -----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버스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이고 중요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수익성 악화 노선 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선버스 준공영제 실시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정안과 같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에 별도의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버스계정에 전속된 재원 없이 현행 다른 계정과 공유 재원인 현행법 제8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과 그 외 일반회계 전입액을 신설되는 버스계정의 주요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 버스계정의 신설로 특별회계의 세출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충분한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계정의 자원 축소가 불가피함.

【 개정안에 따른 신설 버스계정의 주요 세출 항목 】

신설 버스계정의 세출	지원 내용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벽지노선이나 비수익성 노선에 대한 운행명령 및 재난 등에 따른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 지원	신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차량, 시설, 장비 등 개선 지원	신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광역노선 지원	현행 교통체계 관리계정의 세출사업을 버스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이전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보조	도시철도,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 지원	신규

둘째,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사무로서 2004년에 지자체에 이관²⁾ 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건에 따라 상이한 버스정책³⁾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때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셋째, 개정안과 같이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버스 지원 확대·강화를 위한 필요자금 확보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현행법에 따라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⁴⁾, 계정 신설로 인한 재원의 세분화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여 버스계정을 신설하지 않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사항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 지자체별 요금체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운행손실 보조율, 환승할인 시행여부 및 이에 따른 손실 보조율 등이 각각 상이함.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 10. (생략)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12. (생략)

넷째, 안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를 신설되는 버스계정의 세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0조제1항5)에 따른 재정 지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택시 등 버스 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6) 버스계정 신설 취지에 맞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그 중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업종 구분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 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 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조·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 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 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 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최근 수익성 없는 노선의 폐선으로 이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버스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에 동의함.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비수익성 버스노선 국비 지원은 중단거리 대중교통인 대도시권 광역시내버스 노선에 한정되고, 장거리 대중교통인 비수익성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은 없어 장거리 이동권 침해 및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가 있는 바, 비수익성 고속·시외버스 노선 지원 등 국비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함.

다만, 기존의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대도시권 광역시내버스 노선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버스계정 신설 대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봄.

(2) 기획재정부

버스 운영·관리 업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고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지자체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버스운송사업 운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고 지원은 곤란함.

환승할인정책도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정책적 판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 지원도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여 부담할 사안임.

문 의 처
02)6788-55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참고 2

교통회계 계정별 세입·세출 항목(「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제7조)

구분	세입	세출
도로 계정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공공기관 출자 및 용자 수입금 ③ 다른 회계의 예수금 및 전입금 ④ 차입금 ⑤ 공공차관 수입금 ⑥ 공자기금 예수금 ⑦ 도로점용, 유료도로 등 수입금 ⑧ 그 밖의 도로 수입금	① 도로 건설·관리 등 경비 ② 공공기관 출자·출연·용자 ③ 세입의 ③호, ⑤호, ⑥호, 차입금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④ 그 밖의 필요 경비
철도 계정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국가철도공단 국고 납입금 ③ 국가철도공단 용자 수입금 ④ 다른 회계 예수금 및 전입금 ⑤ 차입금 ⑥ 공공차관 수입금 ⑦ 공자기금 예수금 ⑧ 국유재산 매각 대금 ⑨ 역세권개발이익 ⑩ 그 밖의 철도 수입금	① 일반·고속철도 건설·관리 ② 국가철도공단 출연·보조·용자 ③ 일반·고속철도 조사·연구 ④ 세입의 ④호, ⑥호, ⑦호, 차입금에 따른 예수금, 차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의 필요 경비
교통 체계 관리 계정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도시철도, 국가철도공단 용자 수입금 ③ 다른 회계 예수금 및 전입금 ④ 차입금 ⑤ 공공차관 수입금 ⑥ 공자기금 예수금 ⑦ 국유재산 매각 대금 ⑧ 역세권개발이익 ⑨ 그 밖의 도시철도 수입금	① 도시철도 건설·관리 ② 도시철도 보조·용자 ③ 국가철도공단 출연·보조·용자 ④ 도시철도 조사·연구 ⑤ 대중교통수단 고급·다양화 보조·용자 ⑥ 대중교통시설 확충·개선 보조·용자 ⑦ 대중교통육성 조사·연구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⑨ 세입의 ③호, ⑤호, ⑥호, 차입금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⑩ 부산교통공단 채무 원리금 상환 ⑪ 광역버스 보조·용자 ⑫ 그 밖의 필요 경비
공항 계정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③ 소음부담금 ④ 공항소음대책사업 손실 보상 및 이주단지 분양대금 ⑤ 공항시설 사업시행자 용자 수입금 ⑥ 다른 회계 예수금 및 전입금 ⑦ 차입금 ⑧ 공공차관 수입금 ⑨ 공자기금 예수금 ⑩ 그밖의 수입금	①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신설, 개량,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② 공항시설 사업시행자 보조·출연·용자 ③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조사·연구 ④ 세입의 ⑥호, ⑧호, ⑨호, 차입금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의 필요 경비
항만 계정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항만시설 사용료 ③ 국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 ④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⑤ 항만공사 국고 납입금 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용자 수입금 ⑦ 다른 회계 예수금 및 전입금 ⑧ 차입금 ⑨ 공공차관 수입금 ⑩ 공자기금 예수금 ⑪ 그 밖의 수입금	① 항만 조사·연구 ② 항만시설 건설·유지 ③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 원리금 상환 ④ 세입의 ⑦호, ⑨호, ⑩호, 차입금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의 필요 경비

참고 3

교특회계 예산 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4년	'25년	항 목		'24년	'25년
합 계		165,665	155,572	합 계		165,665	155,572
도로	소 계	79,625	72,804	소 계	79,625	72,804	
	자체세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1,382	1,811	고속도로 건설	18,272	10,445	
				국도건설	18,283	17,500	
				도로관리	27,007	27,063	
	일반회계전입금 (교통세, 승용차특소세)	51,862	67,903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10,165	11,715	
	세계잉여금	976	-	국토교통연구개발 등	103	129	
	기금예탁원금회수	8,406	-	회계간 전출금[균특(지역계정)]	2,462	2,336	
	기금예수금	16,675	3,090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3,000	3,000	
기금예탁이자수입	325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333	616		
철도	소 계	48,862	37,672	소 계	48,862	37,672	
	자체세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1,322	1,853	고속철도 건설	5,182	4,654	
				일반철도 건설	20,751	12,586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세, 수입차 관세)	45,714	35,001	철도안전 및 운영	10,104	10,724	
				철도분야 연구개발	669	597	
	세계잉여금	1,826	818	광역철도 건설	11,252	8,598	
광역철도 전출금				904	514		
교통 체계 관리	소 계	9,978	12,970	소 계	9,978	12,970	
	자체세입(재산수입 등)	443	641	도시철도 건설	5,434	6,499	
	일반회계전입금(교통세)	8,192	12,316	국토교통 정보화(유가보조금)	48	28	
	세계잉여금	1,343	13	대중교통 육성	4,496	6,443	
공 항	소 계	9,669	14,410	소 계	9,669	14,410	
	자체세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09	2,713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7,374	11,878	
	일반회계전입금(교통세)	8,960	10,973	항공발전지원	1,280	1,432	
	세계잉여금	-	724	항공분야 연구개발	1,015	1,100	
항 만	소 계	17,531	17,715	소 계	17,531	17,715	
	자체세입	1,838	1,918	항만개발 및 관리	16,026	16,318	
	일반회계전입금(교통세)	15,693	15,780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47	502	
	세계잉여금	-	17	해양수산연구개발	958	895	

※ 자료, 국토교통부